

■ 법률 칼럼

법, 시간이 곧 돈

법률 상담을 하다 보니 시간이 곧 돈과 비례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단순히 Hourly Billing(시간당 수당) 수입료를 받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특허청이나 이민국, 국세청, 공공 의료 보험제도 관할 센터, 심지어는 교통국 등의 각종 정부 기관에서 발급되는 여러 가지 간단한 통지서 등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혹은 지체했다가 큰 화가 되어 급기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고객들이 있다.

몇 달간 의료 정책 기관에서 보내온 통지서를 무시해서 불필요하게 반납된 보험료를 환불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신속하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굳이 법률 상담소를 찾을 필요가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비슷한 사례들로는 특허청에 제때 답변을 보내지 못하여 상표를 여러 번 등록해야 한다거나, 주정부에 연례보고서 한두 장을 보내기를 미루다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체납금을 부과 받는 경우도 있고, 사업체를 타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주정부에 몇 가지 서식 신고 및 정리를 미루다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객들도 있다. 단순히 시간을 끌다가 사업상의 거래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과 업무를 해결해 주고 싶어도 고객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보내주며 협조하지 않아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마감 기한이 지난다거나 추가적인 법률적 처리 접수나 청원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 본의 아니게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또한 소송이나 형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역시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서 멀어질수록 당시 정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곤란해져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대응이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도와주는 입

장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입장에서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몸에 이상신호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 건강의 적신호가 더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간단하게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했던 증상을 무시하고 병을 키우다가 결국 크게 병원의 신세를 지게 되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너무 늦게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 등이 적용되어 소제는 물론 합법적인 조치의 해결책을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어떤 일이든 일단 소송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표시이며, 이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형법이든 민법이든 준법과 시간 준수,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조치이다.

또한 반드시 변호사가 꼭 있어야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송이 되었든 간단한 사무 대행이 되었든, 평소에 사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정리해 놓는 습관만으로도 업무와 이와 관련된 조사를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여 법률 서비스 관련 비용을 절감 혹은 경감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변호사가 고객의 상황에 맞춰 할부 정책을 도입하거나 고정 수입료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lbridge.com
www.jlbridge.com
(213) 344-9929/(949) 477-3004



■ 건강 칼럼

치매는 고칠 수 없는 병일까?

암을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는 많 습니다. 그러나 치매를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주위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서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동에서 일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로 병원을 찾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젊었을 때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치매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이 기억납니다. 자꾸 옷을 벗어 간호원들이 난감해 했습니다. 그분도 젊었을 때는 존경과 신망을 받으면서 학생들을 지도하셨을 텐데 그 어느 누구도 현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주위의 가족 또한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치매의 발병률은 점점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죽는 사람 또한 점점 많아지는데 그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많은 제약 회사에서 치매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법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질병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데일 브레드슨 박사가 '알츠하이머의 종말'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영양, 호르몬, 스트레스, 수면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리코드(ReCODE)'를 개발, 의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UCLA와 캘리포니아대학 교수직을 거쳐 각종 뇌질환과 노화를 연구하는 벅 연구소(Buck

Institute)를 세우고 연구를 하였는데 이 리코드 프로그램을 완성하기까지의 30여 년에 걸친 연구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 바로 '알츠하이머이 종말'입니다.

데일 브레드슨 박사는 이때까지 알츠하이머는 불치병이라는 그간의 통념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브레드슨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는 어떤 강력한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염증, 영양의 불균형, 체내에 쌓이 독성물질 등 다양한 원인의 복합작용을 통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는 수만 번의 임상실험 끝에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36 가지 원인을 밝혀냈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알츠하이머 예방 및 개선책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책에 의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취약한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된 생활습관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한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음식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알츠하이머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Dr. Sung Hye Yi
President & COO
Anti-Fragility Health
www.anti-fragilityhealth.com
TEL. (714) 864-3730
1020 S. Anaheim Blvd, #101
Anaheim, CA 92805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